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규정

1995년 7월 21일 제정 1998년 7월 9일 개정 2000년 5월 19일 개정 2001년 5월 31일 개정
2002년 2월 21일 개정 2005년 1월 27일 개정 2007년 1월 31일 개정 2008년 3월 18일 제정
2009년 3월 5일 개정 2010년 5월 26일 개정 2011년 3월 8일 개정 2012년 3월 26일 개정
2013년 4월 15일 개정 2017년 11월 23일 개정 2018년 3월 22일 개정 2019년 3월 5일 개정
2020년 5월 14일 개정 2020년 10월 28일 개정 **2023년 3월 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운영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제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이라고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의 모든 선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하는 동시에 민주적인 선거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11.23., **2023.3.9.**)

제3조(적용기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개정2013.4.15., **2023.3.9.**)

1. 본부지부 임원(정책부지부장 제외)
2. 산하지부의 임원(정책부지부장 및 사무장 제외)
3. 대의원
4. 선거관리위원

제4조(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 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각종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개정2017.11.23.)

제5조(선거의 원칙) 본 지부에서 행하는 모든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의 원칙하에 실시한다.

제 2 장 선거 관리

제6조(선거의 공정한 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으며, 투표의 비밀을 절대 유지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운영할 의무를 진다.(개정2013.4.15.)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본부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지부선거관리위원회와 산하지부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2017.11.23., 2023.3.9.)

- ① 본부지부 선거관리 위원장 1명
- ② 본부지부 선거관리 부위원장 2명
- ③ 각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 중 2명(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제8조(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신설2013.4.15., 개정2023.3.9.)

- ①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부위원장은** 본부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 **후보자별로 찬반투표를 통한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 다수 득표순으로 3인을 선출한다.**(개정2023.3.9.)
- ② 제①항의 3인 중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무효로 하고 대의원의 재추천을 받아 투표를 실시한다.(개정2017.11.23.)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최다 득표자가 된다.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다.**(개정2023.3.9.)
- ④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7일전까지 입후보 등록 후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신설2020.5.14., 개정2023.3.9.)
- ⑤ 투표당일 선거관리위원 정수에 부족한 경우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2020.5.14.)

제9조(직무) 선거관리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개정2020.5.14.)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명부 작성
 2. 합동연설회 개최
 3.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등록 접수
 4.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5. 투표, 개표의 관리(신설2020.5.14.)
 6.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신설2020.5.14.)
 7.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에 관한 사항(신설2020.5.14.)

8. 당선자의 확정 및 통보(신설2020.5.14.)
 9.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제반 유권해석(신설2020.5.14.)
 10. 선거관리 실무지침 제·개정(신설2023.3.9.)
 11.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신설2020.5.14., 개정2023.3.9.)
-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의 2(의결정족수)(신설2023.3.9.)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임기와 결원보충)

- 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시에는 선거관리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개정2013.4.15., 2023.3.9.)
- ③ 선거관리부위원장이 사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사후 승인한다.(개정2013.4.15., 2023.3.9.)
- ④ (삭제2023.3.9.)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전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각 지부 2곳 이상에 선거 공고 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23.3.9.)
- ② 본부지부장에 대한 선거공고는 선거일 30일 전, 지부장은 16일 전 에 하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에 한다.(개정2017.11.23., 2020.5.14.)
- ③ 입후보자 등록은 대리등록이 가능하다.(개정2017.11.23.)

제12조(선거권) 조합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개정2023.3.9.)

- ①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11조 단서조항 해당자(개정2017.11.23.)
- ②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61조 해당자(개정2017.11.23., 2023.3.9.)
- ③ 현재 조합원 중 선거일 4일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개정2013.4.15., 2020.5.14., 2023.3.9.)
- ④ 신규조합원 중 조합비를 1회도 납부하지 않은 자
- ⑤ 해외연수로 인한 휴직자(개정2017.11.23.)

제13조(선거권제한) 본 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 및 산하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 선거의 경우 동 규정 제12조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부별 선거인명부 **【별표2 겉표지】 【별표2-1 겉표지】 【별표2 내용】**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0.5.14., 2023.3.9.)

제15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로 하며, 매일9시부터 18시 까지로 한다.(개정2017.11.23.)
-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전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2020.5.14.)
-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확정 선거인 명부를 이동식저장장치(암호설정)에 담아 후보자에 전달한다.(신설2023.3.9.)

제16조(부재자신고)

- ① 제14조(선거인 명부작성)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지부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직접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2020.5.14., 2023.3.9.)
 1. 선거일기간 중 공가(출장, 동원훈련 등)중인 자
 2. 선거일현재 병가 또는 산전·후 휴가 중인 자
 3. 청원휴가 중인 자
 4. 선거관리위원 중, 자기 지부에서 선거할 수 없는 자
 5. 후보자의 참관인으로서 자기지부에서 선거할 수 없는 자
 6. 기타 사유에 의하여 투표 불가능한 자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 **【별표18】**에 부재자투표사유, 성명, 소속지부, 직급, 거소지, 성별 등을 기재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20.5.14., 2023.3.9.)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공고일로부터 10일까지 접수된 부재자 신고인에 대하여 정당한 신고사항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한다.(개정2013.4.15., 2023.3.9.)
-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즉각 투표가능지역(지부, 거소지 등)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부재자 신고인은 수령 즉시 투표하여 동봉된 발송용 봉투에 본인의 지부명과 성명을 기재하여 선거일까지 도착토록 신속히 조치한

다.(개정2013.4.15., 2023.3.9.)

-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재자신고인의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대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도착여부를 기재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함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개표일 개표시간까지 도착한 투표용지에 한하여 개표토록 한다.(개정2013.4.15., 2023.3.9.)
- ⑥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재자투표용지가 개표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기권 처리한다.

제17조(지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선거 실무지침을 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제18조(선거관리규정이의 사항에 대한 해석권)

- ①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 ② 제①항을 적용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본부지부 운영위원회가 해석권을 갖는다.(개정2013.4.15., 2023.3.9.)

제 3 장 임원의 선출(개정2023.3.9.)

제19조(선거기간 및 입후보등록기간)

- ①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의 선거일은 **임기만료 년도 11월 네번째 목, 금을 선거일로 정한다.**(개정2023.3.9.)
- ②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의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 공고 5일 이후부터 5일간**으로 한다.(개정2017.11.23., 2023.3.9.)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에 등록후보가 없을 시 3일 이내에 재공고를 한다. 재공고 시는 제①항과 제②항의 적용을 받는다.
- ④ 제③항에 의거해도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본부지부의 운영이 마비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조합에서 직할 운영하며, 산하지부에 후보자가 없을 시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본부지부에서 직할 운영한다.(개정2017.11.23.)

제20조(입후보자 등록)

- ①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 **【별표4】 【별표4-1】**와 조합원 50인 이상(산하지부장은 조합원 15인 이상. 단, 100인 이하 산하지부는 10인 이상)의 서명(후보자간 중복서명 가능) 한 추천서 **【별표5】**

- ① 【별표5-1】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다.(개정2017.11.23., 2020.5.14., 2023.3.9.)
- ②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퇴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2023.3.9.)
- ③ 조합원은 본부지부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산하지부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개정2017.11.23.)
- ④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추천서 1통이다.

제20조의 2(입후보자 결격 사유) 성희롱, 힘희롱으로 공단 및 의료지부(상급단체 포함)에서 경고 이상을 받은 조합원은 퇴직 시 까지 입후보를 할 수가 없다.(신설2023.3.9.)

제21조(입후보자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등록을 마친 자 중 후보등록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 마감일후에 각 후보별로 소개하는 공고문 【별표7】 【별표7-1】을 각 산하지부 2곳 이상에 각 후보 순으로 가로서열 게시하여야 하며, 후보등록 공고문 부착 전에는 후보자의 홍보 전단지 부착하여서는 안된다.(개정2020.5.14., 2023.3.9.)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성별, 조합경력 등을 공고문에 게재하며 입후보자는 공고문에 게재할 사항 등을 등록 마감 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3., 2023.3.9.)
- ③ 후보자에 대한 기호 부여는 후보등록 순으로 추천 우선권을 부여한 후 추천을 통해 순위를 매겨 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개정2023.3.9.)

제22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 ② 동 규정 제27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개정2013.4.15., 2023.3.9.)
- ③ 위 제②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④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개정2023.3.9.)

제23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동등한 근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부지부는 입

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 ② 제①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2017.11.23.)
- ③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인들도 사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2017.11.23.)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각종 홍보수단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한다.(개정2017.11.23.)

제23조의 2(후원금 모금)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계좌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신설2023.3.9.)

제23조의 3(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본 부지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신설2023.3.9.)

제23조의 4(선거비용)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신설2023.3.9.)

- 1. 출장비
- 2. 선거관리위원회 공보물 제작
- 3. 후보자 홍보물 제작

제24조(홍보물)

-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홍보물은 **후보당** 3회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개정2020.5.14., 2023.3.9.)
- ②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 내용과 비방한 홍보물에 대해 배포 금지를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개정2023.3.9.)

제25조(합동연설회)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별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후보당** 정견발표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13.4.15., 2017.11.23., 2023.3.9.)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일시, 장소, 연설택간을 지부별로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23.3.9.)
- ③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택순서는 연설택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 후보자는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택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택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 ⑤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합동연설회 시작 30분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23.3.9.)
- ⑥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개정2013.4.15., 2023.3.9.)

제25조의 2(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2023.3.9.)

제26조(입후보자 방문선거 운동)

- ① 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2023.3.9.)
- ② 후보자가 산하지부 방문시에는 해당 지부에서 후보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2023.3.9.)

제27조(금지사항)

- ① 선거운동기간 중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및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후보자 및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선거를 지연, 방해 하였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운동 중지 등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23.3.9.)
- ③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28조(투표장소 및 시간)

- ①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각 산하지부 지부선거관리위원이 투표장소를 결정한다.(개정2017.11.23., 2023.3.9.)

- ② 직접 선출하는 임원의 투표기간 및 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개정2023.3.9.)
- ③ 투표를 개시할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없음이 확인된 후 개표되어야 한다.

제29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는 **【별표9】 【별표9-1】 와 같이**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2023.3.9.)
-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투표일 4일전까지 각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동 규정 제16조 ③항에 의거 선거인명부 수정 시에는 1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 ⑤ 임원선거에서 개표된 투표용지는 봉인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2023.3.9.)
- ⑥ 전자투표에 의할 경우, 투표 및 개표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는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실무지침을 따른다.(신설2020.5.14., 개정2020.10.28., 2023.3.9.)

제30조(투표참관인)

- ①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투표 5일전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투표 참관인을 변경 할 수 없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인 증 **【별표 8-2】 【별표 8-3】** 을 착용하고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개정2013.4.15., 2020.5.14., 2023.3.9.)
- ② 본부지부 입후보자는 각 산하지부 당 1일 1명의 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참관인 공고문 **【별표8】 【별표8-1】** 을 산하지부 2곳 이상에 투표기간 내 게시하고 참관인에 대해 근무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15., 2020.5.14., 2023.3.9.)

제31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시작 전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표함 봉인지 **【서식1】** 를 봉인하고, 투표일자별로 투표마감시 투표함 투입구 봉인지 **【서식1-1】** 를 봉인하고, 익일 투표시작시 개봉하여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2020.5.14)

제32조(투표절차)

- ①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 ②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33조 (선거개표)

- ① 각 산하지부별로 투표가 종료 시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은 참관인 입회하에 봉인함을 개봉하여 **산하지부별로** 개표를 실시한다.(개정2017.11.23., 2023.3.9.)
- ② 산하지부선거관리위원은 전 항의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록 **【별표10】 【별표10-1】** 을 작성하여야 하며, 개표록에는 조합원총수, 투표조합원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록하여 본부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2023.3.9.)
- ③ 산하지부선거관리위원은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투표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고, 본부지부 임원 선거투표용지 및 투표록은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2017.11.23.)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②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 및 지부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23.3.9.)

제33조의 2(무효투표)(신설2023.3.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4조 (당선자)

- ① 본부지부장 선출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독 후보일 경우에도 이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2013.4.15., 2023.00.)
- ② 본부지부장 후보가 2인 이상 출마한 경우 최고득표자가 과반수이상 득표를 못한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이 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개정2017.11.23., 2023.00.)
- ③ 당선인이 결정됐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인(동반출마자 포함)에게 “당선필증” **【별표12】 【별표12-1】** 을 교부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개정 2017.11.23., 2023.3.9.)

제35조(당선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이 확정된 대표자(임원)를 즉시 공고 **【별표11】 【별표11-1】** 한다.(개정2023.3.9.)

제36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 3. 제39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 4. 제34조(당선자)에 의해 당선자가 없을 경우(신설2020.5.14.)
- ② 위 제①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개정2013.4.15., 2023.3.9.)

제3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①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 선거의 경우 일부 산하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 무효 결정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산하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 ② 위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38조(보궐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개정2013.4.15.)
 - 1. 본부지부 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 2. 본부지부 임원에 대하여 각 선출기관에 의해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 ② 본부지부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직무대행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3.4.15., 2023.3.9.)
- ③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20일 이내에 선거 제반에 관한 사항을 각 **산하지부** 2곳 이상에 **【별표1】 【별표1-1】** 선거공고 하여야 한다.(개정2023.3.9.)
- ④ 본부지부 수석부지부장, 본부지부 사무국장의 보궐선거는 본부지부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선거관리규정에 준한다.(개정2013.4.15., 2023.3.9.)

제39조(이의신청의 처리)

- ① 본부지부장 선거에 있어서 당선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20.5.14., 2023.3.9.)
- ②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개정2013.4.15., 2023.3.9.)
 - 1. 선거무효
 - 2. 당선무효
 - 3. 경고처분

- ③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개정2013.4.15., 2023.3.9.)

제40조(제재) 선거관리위원 등이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23.3.9.)

제 4 장 대 의 원 선 거(개정2023.3.9.)

제41조(선거구) 대의원 선거구는 각 산하지부 근무 부서 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15명당 1명으로 배정하고 지부별 나머지 인원이 10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개정2023.3.9.)

제42조(선거방법)

- ① 이 규정 제5조(선거의 원칙)를 준수한다.(개정2023.3.9.)
- ② 대의원 선거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선거일 10일 전에 선거제반에 관한 사항을 각 산하지부 2곳 이상에 **【별표13】** 을 공고한다. 보궐선거에 대한 공고 및 선거제반에 관한 관리는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개정2017.11.23., 2023.3.9.)
- ③ 각 선거구내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독 후보일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선거인 명부 작성)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 관리 한다.(신설2017.11.23.)

제44조(선거기간 및 입후보자 등록기간)(신설2017.11.23.)

- ① 대의원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2023.3.9.)
- ② 대의원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일간으로 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에 등록후보가 없을 시 3일 이내에 재공고를 한다. 재공고시는 제②항의 적용을 받는다.
- ④ 제③항에 의거해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각 산하지부의 여건에 맞게 후보자를 선정하여, 각 선거구내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5조(입후보자 등록 및 공고)(신설2017.11.23.)

- ① 산하지부 임원은 대의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개정2023.3.9.)
- ②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표14】** 를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한다.(개정2020.5.14., 2023.3.9.)

- ③ 입후보자 공고는 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준한다.

제46조(선거운동기간) 대의원선거는 선거운동기간이 없이 선거를 진행한다.(신설2017.11.23.)

제47조(투표용지)(신설2017.11.23.)

- ① 투표용지는 **【별표9】와 같이**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2023.3.9.)
- ②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48조(당선자 공고)(신설2017.11.23.)**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이 확정된 대의원을 **【별표16】**에 따라 즉시 공고한다.(개정2023.3.9.)

제49조(이의신청의 처리)(신설2017.11.23.)

- ①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당선자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3.3.9.)
- ②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심의한 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1. 선거무효
 - 2. 당선무효
 - 3. 경고처분
- ③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 5 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선거(삭제2023.3.9., 분부지부 운영규정으로 대체)

제 6 장 회계감사위원 선거(개정2020.5.14., 2023.3.9.)

제51조(선거방법)

- ①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회의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 후보자별로 찬반투표를 통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 다수 득표순으로 3인을 선출

한다.(개정2013.4.15., 2020.5.14., 2023.3.9.)

- ② 제①항의 3인 중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무효로 하고 대의원의 재추천을 받아 투표를 실시한다.
- ③ 회계감사위원 중 **수석회계감사**는 최다 득표자가 되며, 차점자 2인이 일반회계감사가 된다.(개정2013.4.15., 2020.5.14., 2023.3.9.)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수석회계감사로 한다.(신설2023.3.9.)
- ④ 회계감사위원 선거 시 별도의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다.(개정2013.4.15., 2020.5.14., 2023.3.9.)
- ⑤ 조합원이 회계감사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7일전까지 입후보등록 후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신설2023.3.9.)
- ⑥ 투표당일 회계감사위원 정수에 부족한 경우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2023.3.9.)

제 7 장 보 칙

제52조(원용) 이 규정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부의 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53조(개표 등) 개표방법 등 선거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개정2013.4.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은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제2조 본부지부 및 지부에서 시행되는 모든 선거는 본 규정에 준한다.

제3조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우선한다.

부 칙(2018.3.22.)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10조[임기와 결원보충] 선거관리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021년부터 3년으로 적용한다.

부 칙(2019.3.5.)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20.5.14.)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부 칙(개정2023.3.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 선거공고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부지부장, 본부수석부지부장, 본부사무국장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00 시부터
 년 월 일 00 시 까지
2. 투표장소 : 본부(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장소
3. 입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00 시부터
 년 월 일 00 시까지
4. 입후보자 등록 장소 : 본부지부 사무실
5. 입후보자 구비서류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 2) 추천서 1통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별표 1-1】 (개정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임원 선거공고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00 시부터
 년 월 일 00 시 까지
2. 투표장소 :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장소
3. 입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00 시부터
 년 월 일 00 시까지
4. 입후보자 등록 장소 : 0000지부 사무실
5. 입후보자 구비서류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 2) 추천서 1통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별표 2 겉표지】(개정2023.3.9.)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선거 선거인 명부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적조합원 수(총 지부 조합원수) :

■ 사고자 수(병가, 휴가, 징계 등) :

■ 총선거인 수(재적조합원수-사고자수) :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	확인 :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임원선거 선거인 명부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임원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적조합원 수(지부 조합원수) :

■ 사고자 수(병가, 휴가, 징계 등) :

■ 총선거인 수(재적조합원수-사고자수) :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	확인 :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별표 3】(개정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공고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열람
년 월 일 확정

2. 열람시간 : 00 : 00 ~ 00 : 00 까지

3. 장 소 : 본부지부 사무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인)

【별표 3-1】 (개정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임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공고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임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열람
 년 월 일 확정
2. 열람시간 : 00 : 00 ~ 00 : 00 까지
3. 장 소 : 0000지부 사무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인)

【별표 4】 (개정2023.3.9.)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본부지부장 · 본부수석부지부장 · 본부사무국장
선거후보자 등록신청서

	본부지부장	본부수석부지부장	본부사무국장
성 명			
주 소			
소 속			
직렬 및 직급			
생년월일			
노조경력			

상기자들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본부지부장 · 본부수석부지부장 · 본부사무국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본부지부장 후보자 (인)

본부수석부지부장 후보자 (인)

본부사무국장 후보자 (인)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추천서 1통

【별표 4-1】 (개정2023.3.9.)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선거후보자 등록신청서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성명		
주소		
소속		
직렬 및 직급		
생년월일		
노조경력		

상기자들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지부장 후보자 (인)
수석부지부장 후보자 (인)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추천서 1통

【별표 5】 (개정 2023.3.9.)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본부지부장 본부수석부지부장·본부사무국장 선거후보자 추천서

1. 입후보자

1) 본부지부장 후보

소 속 : 지부 직렬 및 직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2) 본부수석부지부장 후보

소 속 : 지부 직렬 및 직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3) 본부사무국장 후보

소 속 : 지부 직렬 및 직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본부지부장·본부수석부지부장·본부사무국장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1. 추천자 성명

일련번호	소속지부	부서	성명	서명	비고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표 5-1】 (개정2023.3.9.)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선거후보자 추천서

1. 입후보자

1) 지부장 후보

소 속 : 지부 직렬 및 직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2) 수석부지부장 후보

소 속 : 지부 직렬 및 직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동지를 년 월 일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1. 추천자 성명

일련번호	소속지부	부서	성 명	서 명	비고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표 7】(개정2023.3.9.)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 입후보 등록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되는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00대 본부지부장·본부수석부지부장·본부사무국장 입후보자를 선거관리규정 제20조【입후보자 등록】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호 0번	본부 지부장 후보자	사진 (3×4cm)	본부 수석 부지부장 후보자	사진 (3×4cm)	본부 사무국장 후보자	사진 (3×4cm)
후보자 성명	한 글 :		한 글 :		한 글 :	
직렬 및 직급						
출생년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소삭제와 출생년도만 표기(외부공고용)					
노조 경력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인)

【별표 7-1】(개정2023.3.9.)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임원 입후보 등록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되는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제00대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입후보자를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입후보자 등록】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호 0번	지부장 후보자	사진 (3×4cm)	수석 부지부장 후보자	사진 (3×4cm)
후보자 성명	한 글 :		한 글 :	
직렬 및 직급				
출생년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소삭제와 출생년도만 표기(외부공고용)			
노조 경력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인)

【별표 8】(개정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선거 투표 참관인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선거** 투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연번	참관지부명	현재소속지부	부 서	성 명	비 고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인)

【별표 8-1】(개정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임원선거 투표 참관인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임원선거 투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연번	부 서	성 명	비 고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인)

【별표 8-2】(개정2023.3.9.)

투표참관인증		
기호	번	00 후보자
	소 속 :	
	성 명 :	
<p>위 조합원은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제00대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0번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p>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별표 8-3】(개정2023.3.9.)

투표참관인증		
기호	번	00 후보자
	소 속 :	
	성 명 :	
<p>위 조합원은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제00대 지부장·수 석부지부장에 입후보한 기호 0번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임을 확인합니다.</p>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단일후보)

<p>No. 001</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제00대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p> <p style="text-align: center;">본부지부장 · 본부수석부지부장 · 본부 사무국장 선거</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제00대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p> <p style="text-align: center;">본부지부장 · 본부수석부지부장 · 본부사무국장 선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찬성</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반대</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p> </div>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다수후보)

<p>No. 001</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제00대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p> <p style="text-align: center;">본부지부장 · 본부수석부지부장 · 본부 사무국장 선거</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제00대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p> <p style="text-align: center;">본부지부장 · 본부수석부지부장 · 본부사무국장 선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10%;">기호</th> <th style="width: 30%;">직위</th> <th style="width: 30%;">성명</th> <th style="width: 30%;">기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td> <td>본부지부장후보</td> <td>홍 길동</td> <td></td> </tr> <tr> <td>본부수석부지부장후보</td> <td>홍 길동</td> <td></td> </tr> <tr> <td>본부사무국장후보</td> <td>홍 길동</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td> <td>본부지부장후보</td> <td>홍 길동</td> <td></td> </tr> <tr> <td>본부수석부지부장후보</td> <td>홍 길동</td> <td></td> </tr> <tr> <td>본부사무국장후보</td> <td>홍 길동</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p> </div>	기호	직위	성명	기표	1	본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본부수석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본부사무국장후보	홍 길동		2	본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본부수석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본부사무국장후보	홍 길동	
기호	직위	성명	기표																						
1	본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본부수석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본부사무국장후보	홍 길동																							
2	본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본부수석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본부사무국장후보	홍 길동																							

투표지

(단일후보)

<p>No. 001</p> <p>20**년 제00대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지부장 · 수석부지부장 20**,**,**~**</p> <p>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장</p>	<p>20**년 제00대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지부장 · 수석부지부장 선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찬성</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반대</th> </tr> <tr> <td style="height: 50px;"></td> <td style="height: 50px;"></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장 </p>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다수후보)

<p>No. 001</p> <p>20**년 제00대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지부장 · 수석부지부장 선거 20**,**,**~**</p> <p>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장</p>	<p>20**년 제00대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지부장 · 수석부지부장 선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10%;">기호</th> <th style="width: 30%;">직위</th> <th style="width: 30%;">성명</th> <th style="width: 30%;">기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부장후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홍 길동</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석부지부장후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홍 길동</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부장후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홍 길동</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석부지부장후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홍 길동</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장 </p>	기호	직위	성명	기표	1	지부장후보	홍 길동		수석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2	지부장후보	홍 길동		수석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기호	직위	성명	기표																
1	지부장후보	홍 길동																	
	수석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2	지부장후보	홍 길동																	
	수석부지부장후보	홍 길동																	

【별표 11】 (개정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제00대 본부지부장, 본부수석부지부장, 본부사무국장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호	성명	재적 조합원수	총 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본부지부장 후보				
	본부수석부지부장 후보				
	본부사무국장 후보				
2	본부지부장 후보				
	본부수석부지부장 후보				
	본부사무국장 후보				

2. 최종 당선인

기호00번

본부지 부 장 후보 0 00

본부수석부지부장 후보 0 00

본부사 무 국 장 후보 0 00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인)

【별표 11-1】 (개정 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제00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기호	성명	재적 조합원수	총 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1	지부장 후보				
	수석부지부장 후보				
2	지부장 후보				
	수석부지부장 후보				

2. 최종 당선인

기호00번

지 부 장 후보 0 00

수석부지부장 후보 0 00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인)

당 선 필 증

성명 : 본부지부장
 본부수석부지부장
 본부사무국장

위 동지들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의료 본부지부 임원선거에서 제00대 본부지부장·본부
수석부지부장·본부사무국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증명합
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인)

【별표 12-1】 (개정2023.3.9.)

당 선 필 증

성명: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위 동지들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의료 0000지부 임원선거에서 제00대 지부장·수석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인)

【별표 13】 (개정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대의원 선거공고

근로복지공단의료 대의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00 시부터
 년 월 일 00 시 까지

2. 투표장소 :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장소

3. 입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00 시부터
 년 월 일 00 시까지

4. 입후보자 등록 장소 : 각 지부 노동조합 사무실

5.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인)

【별표 14】 (개정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구 명	제 ○ 지구
성명	
부서	
직렬 및 직급	
출생년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소삭제와 출생년도만 표기
노조경력	

상기자들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대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표 15】(신설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대의원 입후보 등록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되는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대의원 입후보자를 선거관리규정 제45조 【입후보자 등록 및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구 명	제 ○ 지구
성명	한 글 :
부서	
직렬 및 직급	
출생년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소삭제와 출생년도만 표기(외부공고용)
노조 경력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인)

【별표 16】 (신설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대의원 당선인 결정 공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된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대의원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결과

선거구 명	성명	재적 조합원수	총 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제 ○ 지구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0000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인)

【별표 17】 (신설2023.3.9.)

공고 제 호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회계감사, 선거관리위원] 선거공고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회계감사, 선거관리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년 월 일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00 시부터
 년 월 일 00 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 장소 : 본부지부 사무국장

4.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별표 18】 (개정2023.3.9.)

부재자 신고서

소속지부		직종		직급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 명				성 별	남·여

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해주세요.			
NO.	부재자 신고사유	해당사유	[6.기타사유] 내용 기재
1	선거일기간 중 공가(출장, 동원훈련 등)중인 자		
2	선거일현재 병가 또는 산전.후 휴가 중인 자		
3	청원휴가 중인 자		
4	선거관리위원 중, 자기 지부에서 선거할 수 없는 자		
5	후보자의 참관인으로서 자기 지부에서 선거할 수 없는 자		
6	기타 사유에 의하여 투표 불가능한 자		

본인은 「본부지부 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_____ (서명)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 1] (신설 2020.5.14.)

투표함 봉인지		
서명	선거관리위원	
	투표참관인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1-1] (신설 2020.5.14.)

투표함 투입구 봉인지		
서명	선거관리위원	
	투표참관인	
투표일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